

제286회 임시회  
2010. 2. 3(수)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2. 3.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29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2010. 2. 2.)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의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강길중)

### 1. 제안이유

- 지난 1. 25. 공직선거법이 일부개정되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를 상하 60% 범위내로 조정

### 2. 주요내용

- 시·군의회 의원 정수 : 131명(현행과 같음)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계	131	26	19	13	12	8	8	8	7	7	8	8	7
비례	17	3	2	2	2	1	1	1	1	1	1	1	1
지역	114	23	17	11	10	7	7	7	6	6	7	7	6

-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별표 2)
- 시·군의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 1인당 평균인구의 최소 40%, 최대 160% 범위내 선거구 획정
- 의원 1인당 인구편차 최소화를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증평균 증평읍 일부를 분할하여 도안면 선거구로 획정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장용대)

#### 가. 조례 개정 이유

이번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평등과 관련하여 시·군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 기준<sup>1)</sup>을 제시함.

개정된 「공직선거법」내용을 반영하는 시·군의원 정수는 동법 제23조에서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약칭함)가 정하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과 선출의원 정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하되 동법 제26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1) 인구편차 허용 한계는 인구비례, 지역대표성, 도농편차 등 고려할 사항이 유사한 시·도의원 획정시 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함.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을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함.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2010년 1월 18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하고,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 각정당, 시·군 및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를 도지사안으로 확정하여 1월 29일 도의회에 제출됨.

## 나. 의원정수 책정

시·도별 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별표3)에서 정하고, 우리도 시·군의원 총정수는 131명이며 2006년도 중선거구제 도입시 시·군의원 총정수<sup>2)</sup>와 동일함.

시·군별 의원 정수는 당해 시·도별 시·군의원 총정수 범위내에서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최소 정수 7인으로 하며,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을 비례대표 정수로 하도록 하고 있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책정 기본방향을 기존 시·군의원 선거구와 시·군별 의원 총수는 기존을 유지하면서 인구비율 30%와 읍·면·동 비율 70%를 적용하되, 읍·면수가 9개 이상인 군에 1명을 추가배정하고, 인구편차 기준을 감안하여 선거구 및 의원수를 일부 조정하여 조례안 별첨 1과 같이 시·군별 의원 정수를 책정하였음.

2) 2006년도 선거구 획정 방법 : ① 인구비율 30%, 읍·면·동비율 70% 반영 ② 읍·면·동이 9개이상인 군에 1명 추가, ③ 최하 7명, 최대 26명 범위 내에서, ④ 기타 위원들의 의견 반영

## 다. 선거구 획정

시·군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인구·행정 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며 하나의 읍·면·동은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때에는 분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중선거제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1개 선거구당 의원 4명 이상부터 분구하는 것으로 하며, 지역선거구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안에서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평균인구를 최소 40%, 최대 160%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함.

또한, 동법 부칙 제4조 「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증평균 증평읍 일부를 분할하여 도안면 선거구로 획정하는 기준인 붙임2에 의하여 총46개의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붙임3과 같이 획정하였음.

- 4인 선거구 : 2개소
- 3인 선거구 : 18개소
- 2인 선거구 : 26개소

## 라. 종합의견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의 최우선인 인구비례에 지역대표성, 도농편차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거권에 대한 평등성과 경쟁자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중요함.

헌법재판소에서 정하는 선거권 평등에 대한 기본구성 요소인 인구 비례와 행정구역, 교통, 지세 등 그 밖의 조건 등을 감안한 인구편차 기준의 허용 한계에서 정함.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시·군의원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하되,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이 있어 인구비율과 지역대표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일부 4인 선거구의 경우에는 지세·교통·생활권역과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선거구가 동일한 점 등 다소 쟁점이 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선거구 획정시 음성군, 보은군 경우 인구와 의원정수와 관계, 제천시 경우 인구와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적정한 선거구를 획정하였다고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참고사항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선거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4조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2월 28일까지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위 기간까지도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같은 법 부칙 제4조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 관련>

구 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읍·면·동수
충청북도	합계	114	46개 선거구	154
청주시	소계	23	9개 선거구	30
	청주시 “가”선거구	3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을량·사천동, 오근장동	5
	청주시 “나”선거구	3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5
	청주시 “다”선거구	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3
	청주시 “라”선거구	3	분평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3
	청주시 “마”선거구	2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4
	청주시 “바”선거구	2	성화·개신·죽림동, 산남동	2
	청주시 “사”선거구	2	북대제1동, 북대제2동	2
	청주시 “아”선거구	3	가경동, 강서제1동	2
	청주시 “자”선거구	2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4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읍·면·동수
충주시	소계	17	7개 선거구	25
	충주시 “가”선거구	2	양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4
	충주시 “나”선거구	2	주덕읍, 이류면, 살미면, 수안보면	4
	충주시 “다”선거구	3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4
	충주시 “라”선거구	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5
	충주시 “마”선거구	2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2
	충주시 “바”선거구	2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3
	충주시 “사”선거구	4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3
제천시	소계	11	5개 선거구	17
	제천시 “가”선거구	2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3
	제천시 “나”선거구	2	고암·모산동, 청전동	2
	제천시 “다”선거구	2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서부·영천동	3
	제천시 “라”선거구	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6
	제천시 “마”선거구	3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3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읍·면·동수
청원군	소계	10	4개 선거구	14
	청원군 “가”선거구	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5
	청원군 “나”선거구	3	남이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5
	청원군 “다”선거구	2	내수읍, 북이면	2
	청원군 “라”선거구	3	오창읍, 옥산면	2
보은군	소계	7	3개 선거구	11
	보은군 “가”선거구	2	보은읍	1
	보은군 “나”선거구	2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4
	보은군 “다”선거구	3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6
옥천군	소계	7	3개 선거구	9
	옥천군 “가”선거구	3	옥천읍	1
	옥천군 “나”선거구	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4
	옥천군 “다”선거구	2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4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의원 정수	선거구역	읍·면·동수
영동군	소계	7	3개 선거구	11
	영동군 “가”선거구	3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3
	영동군 “나”선거구	2	용산면, 심천면, 양산면	3
	영동군 “다”선거구	2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5
증평군	소계	6	2개 선거구	2
	증평군 “가”선거구	4	증평읍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사곡리 제외)	1
	증평군 “나”선거구	2	도안면 (증평읍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사곡리 포함)	1
진천군	소계	6	2개 선거구	7
	진천군 “가”선거구	3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3
	진천군 “나”선거구	3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4
괴산군	소계	7	3개 선거구	11
	괴산군 “가”선거구	3	괴산읍, 칠성면, 소수면, 문광면	4
	괴산군 “나”선거구	2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	4
	괴산군 “다”선거구	2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3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읍면·동수
음성군	<b>소계</b>	<b>7</b>	<b>3개 선거구</b>	<b>9</b>
	음성군 “가”선거구	3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4
	음성군 “나”선거구	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3
	음성군 “다”선거구	2	대소면, 삼성면	2
단양군	<b>소계</b>	<b>6</b>	<b>2개 선거구</b>	<b>8</b>
	단양군 “가”선거구	3	단양읍, 대강면, 적성면, 단성면	4
	단양군 “나”선거구	3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4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 &lt;본문생략&gt;</p> <p>제2조 &lt;본문생략&gt;</p> <p>제3조(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 26조제 2항, 같은 법 부칙 제4조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p>

## 관련법령 발췌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3과 같이하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의원정수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생략”(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 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⑥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 확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략(국회의원선거구확정 관련)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는 선거구확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확정위원회의 선거구확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⑪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 ①생략(시·도의원선거구확정 관련)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제3항, 제93조제2항, 제108조제3항제4호, 제13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시행령】

-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각각 2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위원장의 명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위원에게는 당해 시·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 ⑨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제3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중양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이란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남도 김해시·거창군을 말한다.